

◆ 政府 施策 ◆

공업기반 기술 개발사업 시행계획 확정

— 通産部, 5개년계획 금년부터 시행 —

정부는 산업계 수요위주의 전략적 개발지원분야 700여개를 도출해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올부터 시행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95년도 1차 공업기반기술개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올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통산부는 우선 2천년대 우리의 산업기술개발 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해 나가기 위해 산업계 수요 위주의 전략적 개발지원분야 700여개를 도출, 올부터 5년간 지원해 나가기로 하고 소요재원 2조 2천억원(정부 1조 1천억원, 민간 1조 1천억원)은 재정경제원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에 반영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오는 4월말까지 43개 산·학·연 기술교류회에서 도출한 680개 과제의 검증을 통해 최종 지원분야를 확정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산업기술발전 5개년 계획의 1차년도 사업과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 등 올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예산 1918억원의 사업별 지원금액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공통애로 기술개발사업에 530억원,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에 460억원,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에 377억원, 항공우주개발사업에 270억원, 기타 부품연구소와 산업디자인·포장 기술 개발 등에 55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 공업발전기금 운용 · 관리요령 공고 ◆

통상산업부는 공업발전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1995년도 공업발전기금 운용 · 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통상산업부 공고 제1995-13호, '95. 2. 13) 했다.

'95 공업발전기금 운용 · 관리 요령

I. 부문별 지원 규모

(단위 : 억원)

| 지 원 부 문 | 지원규모 |
|-------------------|-------|
| 1. 기술개발 | 1,745 |
| ○ 시제품 개발 | 1,200 |
| ○ 첨단산업기술개발 | 545 |
| 2.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 700 |
| ○ 생산성향상 | 450 |
| ○ 산업공해시설 개체 | 200 |
| ○ 고부가가치화 | 50 |
| 3. 염색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 | 170 |
| 계 | 2,615 |

II. 부문별 용자대상 및 취급기관

1. 시제품 개발사업

가. 용자대상 : 다음 각호의 시제품, 신기술, 제품디자인, 자원절약기술 및 환경오염 방지기술 등을 개발하려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다만,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세칙 제3조에 의거 선정된 계열기업군 및 대상기업체(이하 “계열기업군 및

대상기업체”라 한다)는 제외), 계열기업군 및 대상기업체가 아닌 대기업(섬유소재개발에 한함)

- 1) 통상산업부장관이 기계류 · 부품 및 소재 국산개발대상으로 고시한 품목의 개발사업
- 2) 통상산업부장관이 공업기반기술과제로 공고한 과제의 개발사업
- 3) 통상산업부장관이 생산기술발전 5개년계획의 시행계획으로 공고한 과제의 개발사업
- 4) 통상산업부장관이 전자핵심기술 및 부품개발계획으로 공고한 개발사업과 표준화 사업
- 5) 섬유신기술 및 소재관련 기술개발사업
- 6) 다음 각 업체 등의 제품디자인 기술개발 사업

가)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회사, 산업디자인 관련기업 부설연구소, 대학, 전문대학 및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과 디자인개발계약을 체결한 제조업체

나) 자체 디자인 전담부서(통상산업부장관의 인정을 받은것)를 운영하면서 제품 디자인을 개발하는 업체

다)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회사가 제조업체에 공급하기 위한 제품디자인을 개발하는 경우(단, 가)의 규정에 의해 제조업체가 디자인개발계약을 체결한 전문회사의 디자인 개발사업은 제외

라) 산업기술연구조합을 설립하여 제품디자인 개발을 추진하는 제조업체

7) 자원재활용,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술개발사업

8) 첨단기술산업의 제품 또는 부품의 신개발에 필요한 금형개발사업

9) 특허법 제87조 및 실용신안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기술을 최초로 사업화하고자 하는 업체의 개발사업

10)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신기술 및 신제품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의 개발사업

나. 공동개발사업 인정범위 : 2개 이상의 업체가 민간생산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 계속사업 : 기금사업의 사업기간이 30개월 이상이 되는 장기과제인 경우 2회계년도를 단위기준으로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라. 취급기관

1) 기계부문 : 한국기계공업진흥회

2) 전자부문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3) 전기부문 : 한국전기공업진흥회

4) 섬유소재부문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5) 일반소재부문 : 한국생산성본부

6) 제품디자인부문 :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2. 첨단산업기술개발사업 : (생략)

3.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산업 : (생략)

4. 염색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 사업 : (생략)

Ⅲ. 용자조건

1. 시제품개발 및 첨단산업기술개발사업

| 용자금리 | 용자기간 | 과제당한도액 | 용자비율 | 자금의지원범위 |
|--------|--------------------------|---|--|--|
| 연 6.5% | 5년이내 : (2년거치 3년분할) | - 시제품 : 5억 원 이 내 (공 동개발사업 : 8 억 원 이 내) - 첨단 : 10 억 원 이 내 (공 동개발사업, 계속사업: 제한없음) | 운전 및 시설소요자금 의 각 70%이내(다만,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용 기구, 기자재 및 시험생 산시설등 시설자금에 한해서는 100%이내) | 1) 기술개발을 위한 자체연구 및 위 탁연구개발비 - 연구인력인건비 - 견본비 및 재료비 - 시험검사비 - 연구인력교육연수비 - 기술지도비 - 위탁연구개발비 2) 연구개발용 기구·기자재 구입 비 3) 기술도입비 4) 외국기술인증획득비 5) 시험생산시설의 건설 및 운전비 6) 기술개발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타 경상비 |

2.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사업, 염색공단폐수처리시설확충 사업 : (생략)

Ⅳ. 신청 : 선정 및 의무사항

1. 지원신청

가. 신청기한 : 취급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함.

나. 신청·접수기관 : 위 “Ⅱ부문별 용자대상 및 취급기관”의 각 취급기관

다. 용자취급은행

1) 시제품, 첨단산업기술개발사업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2)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염색공단폐수처리시설확충사업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대구은행, 한일은행, 조흥은행, 부산은행, 동남은행, 국민은행, 상업은행

라.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취급기관 소정양식) 2부

2) 기타 참고자료

2. 사업자 선정 및 우대조치

- 가. 취급기관의 장은 용자대상사업자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해 부문별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기술개발능력, 사업화 가능성, 개발과제의 중요성, 설치시설의 중요도, 생산기여도, 사업의 효과등을 대상으로 취급기관에 합당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나. 취급기관의 장은 전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내용을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부문별 지원규모 범위내에서 사업자를 선정한 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기금을 용자받을 수 있는 자로 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다. 기술개발부문 취급기관의 장은 용자대상 사업자중에서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높은 중소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2의 규정에 의한 부설연구기관)가 설치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조치하여야 한다.

3. 신청자 의무사항

- 가. 대출완료기한 : 기금을 용자지원받기로 확정된 자(이하 '용자사업자'라 한다)는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임하는 자의 기한연장조치가 없는 한 확정통보후 8개월(시설자금은 12개월)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 나. 수수료 납부 : 용자사업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취급기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다. 목적외 사용금지 : 기금을 용자받은자(이하 '기금사용자'라 한다)는 그 용자받은 자금을 용자받은때에 지정된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 라. 구분계리 : 기금사용자는 해당 자금을 타자금과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 마. 보고의무 : 기금사용자는 공업발전기금업무운용규정 제23조에 정하는 내용의 보고사항을 정해진 기일내에 취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취급기관 및 용자취급은행의 장 의무사항

- 가. 대출자금의 기한전 회수
 - 1) 취급기관의 장은 기금사용자가 용자자금을 당초 지원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개발계획을 중단할 경우에는 기금의 용자를 취소 또는 중단하고 용자 취소일 또는 중단일, 적용이자율, 회수기한 등을 정하여 용자 취급은행의 장에게 대출자금을 회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2) 취급은행의 장은 제1항의 회수요청에 따라 대출일 또는 개발중단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기간 동안 해당은행 시설자금 최고대출금리를 적용하여 대출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나. 보고의무

- 1) 취급기관의 장 및 취급은행의 장은 공업발전기금업무운용규정 제28조1항 및 2항에서 정하는 내용의 보고사항을 정해진 기일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에너지 기술개발 및 대체에너지 보급사업 지원지침 공고 ◆

통상산업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동법시행령 및 동운용요령 통상산업부 고시 제 1994-10호('94. 12. 31) 규정에 의거 에너지 기술개발 및 대체에너지 보급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그 세부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통상산업부 공고 제1995-14호, '95. 2. 14) 했다.

에너지 기술개발 및 대체에너지 보급사업 지원지침

1.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가. 출연금

- 에너지기술개발사업(대체에너지 기술개발 포함) : 25,081백만원

나. 보조금

- 대체에너지시범보급사업 : 500백만원

다. 융자금

- 에너지기술개발사업(대체에너지 기술개발포함) : 2,000백만원
- 대체에너지보급사업 : 15,000백만원

- 주: 1) 출연금: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운용규정, 에너지기술개발사업운용규정 및 통상산업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함.
- 2) 보조금: 대체에너지시범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계획 및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함.
- 3) 융자금: 융자대상기관(에너지관리공단)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하며 대출지원금액은 인출 기준으로 함.

2. 대출대상

| 사업명 | 대출대상자 | 비고 |
|----------------------|---|---------------------------------------|
| ○ 에너지기술개발 - 연구자금 | ○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운용규정 및 에너지기술개발사업운용규정에 의거 선정 추진되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수행자 | 사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포함 사업종료후 3년 미경과자 |
| ○ 대체에너지 보급 - 시설자금 | ○ 대체 에너지 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대체에너지 생산 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
| - 운전자금 | ○ 연구개발에 사업주관기관으로 참여한 사업자 ○ 대체에너지의 생산공급자 또는 협동 조합 | |

3. 대출조건 및 절차

가. 대출조건

| 자금부분 | 대출비율 | 이자율 | 상환기간 | 당해년도대출한도 |
|------|----------------------------|-------|---------------------------------------|-------------|
| 연구자금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연리 5% |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 | 동일 건당 5억원 |
| 시설자금 | 소요자금의 80%이내(대기업의 경우 50%이내) | 연리 5% |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소수력발전 시설은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 동일사업자당 10억원 |
| 운전자금 | 소요자금의 80%이내 | 연리 5% |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 동일 사업자당 5억원 |

※ 시설자금의 대출비율중 소수력발전시설 설치의 경우 기전설비는 소요자금의 100%이내, 토건설비는 소요자금의 25%이내로서 총 소요자금의 80%이내로 함.

나. 대출절차

- 에너지지원기술개발 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해당은행(한국대체신탄공업협동조합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함. 태양열 온수기등 소액(300만원이하)인 태양열 이용시설은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

工場설립 節次 대폭 간소화

— 政府, 2월중 운영지침마련 시행계획 —

공단조성 및 공장설립에 소요되는 행정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각종 인·허가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획기적으로 간소화된다. 정부는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 기획단 주관하에 재경원·통신부·건교부·환경부 등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공장조성 및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업단지의 개발과 공장설립을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각 개별법령에 의해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241종의 구비서류중 꼭 필요한 108종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공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필요한 서류는 92종에서 32종으로 축소되고 공장설립 및 입지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91종에서 41종으로, 그리고 공장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58종에서 35종으로 각각 축소된다.

또 지방공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공업단지 지정·환경영향평가·실시계획승인·준공인가 등 행정처리에 지금까지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2~3년까지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5개월이내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단 지정과 실시계획승인에 소요되는 행정처리기간을 각각 120일과 40일에서 60일과 30일로 단축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소요기간도 현행 180일에서 110일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과거 공업단지 지정이후에 시작하던 것을 공업단지개발계획과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앞당겼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방공단 개발과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시 협의기관은 10일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지방공단 지정시 100만평방미터 미만까지는 건교부장관 승인없이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30만평방미터 이상의 공단지정시에는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개별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는데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45~60일에서 30~35일로 단축하고 공장설립신고·건축허가·착공신고·준공허가·공장등록 등 5단계로 돼있는 공장설립절차에서 공장설립신고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와관련, 입지상 제약요인이 없는 경우 공장설립신고절차를 폐지하고 제약요인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현행 사전허가 또는 승인제도를 유지하되 공장설립허가·공장설립승인·입지지정승인으로 구분된 절차를 공장설립승인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통산부·건교부·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간소화방안의 시행을 위해 1·4분기중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법령개정이전에도 기업이 이번 조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월중에 운영지침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中企 金融支援 대폭 擴大 — 政府, 中小企業지원 9대 施策 마련 —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특지원 및 증자 등으로 상업어음 할인재원을 대폭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능력 확대와 지역 신용보증조합 설립 등을 통해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한해 연지급수입기간을 연장하고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자유화해 외화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의 상업어음 할인재원을 財特에서 1천억원을 지원하고 올해 1400억원의 자본금을 증자, 총 9600억원의 상업어음 추가지원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할인된 상업어음을 근거로 하는 표지어음 발행을 4월부터 상호신용금고에도 허용하고 3단계 금리자유화 시점에 맞춰 제1금융권의 매출조건을 제2금융권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달부터 중소기업의 연지급수입기간을 수출용은 180일, 내수용은 90일로 각각 30일씩 연장하고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완전 자유화키로 했다.

직접금융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및 유상증자 물량은 전액 허용하고 회사채 발행에 대한 信保기관의 보증한도를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키로 했다. 또 10대 그룹 계열사중 소유분산이 잘된 기업의 창투사에 대한 투자한도(현재 20%)를 폐지해 창투재원을 확충하고 현재 업력 10년으로 돼있는 중소기업의 증시 상장요건을 7년으로 단축했다.

정부는 信保의 법정보증한도를 현행 기본재산의 15배에서 20배로 확대하고 보증요율 최고한도(1%)를 폐지, 보증요율을 차등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올해 경남·광주 등 2~3개 지역에 자본금 2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조합 설립을 허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2월중 전남·북과 강원등 3개도의 지방공단중 5개를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소득세·법인세 등을 5년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97년까지 서울 목동에 중소기업 전용백화점을 건립, 판로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세계화와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100PPM 운동을 통한 대대적인 품질혁신운동도 전개키로 했다.

▲ 중소기업지원 9대 시책 요지

| 9대 시책 | 주요 내용 |
|-------------------------|--|
| 1.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대폭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은행의 상업어음할인 재원확충(자본금증자 1,400억원 재특지원 1,000억원) ○ 상호신용금고 표지어음 발행허용(95. 4) ○ 중소기업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폐지(95. 2) ○ 중소기업 연지급 수입기간 30일 연장(95. 2) ○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시 보증한도 확대(매출액 1/4→1/3) ○ 중소기업 상장요건 완화(업력 10년→7년) |
| 2.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획기적 보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신용보증조합 설립(95년 중 2~3개) ○ 기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능력 확충(법정운용배수확대: 15배→20배) |
| 3.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의 확대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개선사업 기간 연장(96→97년, 1조원 추가) ○ 중소기업진흥복권 발행(95년 400억원) |
| 4. 품질혁신사업의 대대적 전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PPM 품질혁신사업 본격 추진 ○ ISO 9000 규격획득 지원(2000년까지 5,000개업체) |
| 5.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자금 확대(94년 8,721억원→95년 11,888억원) ○ 연구소·대학 보유기술 중소기업 무상제공(95년 150건) ○ 부품분야의 한·일 중소기업 협력사업 확대 추진 |
| 6. 중소기업 전용백화점 건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년까지 2만평 규모의 전용백화점건립(서울, 목동) ○ 지방상설전시판매장 단계적 건립 추진) |
| 7.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실질적인 협력증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과 대기업 경영자 합동연찬회 개최 등을 통한 의식 제고 ○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범위 확대 |
| 8.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중소기업자금 확대(2,500억원) 및 대출금리 인하(7.5%→7%) ○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5개공단) ○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대전, 광주) ○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 설치(11개 지방공업기술원) |
| 9. 중소기업의 세계화 지원 및 규제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해외투자자금 우선지원) ○ 신용장(일람불)방식 수출에 대하여 수출승인을 전면 폐지하고 기타방식 3만불이하 수출에 대해서도 승인면제 |

기술교류회별 産業技術개발분야 도출 - 通産部, 상반기중 산업기술발전 5개년계획 공고 -

통상산업부는 2천년대를 향한 산업기술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단계로 섬유 등 43개 산업 분야에서 방사기 및 사가공기 등 680개 분야의 산업기술개발분야를 도출했다.

통산부는 이번에 도출된 680개 산업기술개발지원분야를 토대로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중에 산업기술발전 5개년 계획으로 공고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또 680개 산업기술개발 지원 분야별로 두차례에 걸친 전문가집단의 조사를 통해 ▲기술개발 착수시점 ▲개발소요시간 ▲사업화소요기간 ▲기술적 성공 가능성 및 기술개발제약요인 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증을 실시, 수요도출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통산부는 산업기술발전 5개년계획수립에 앞서 기술수요조사를 위해 섬유·전자·철강 등 43개 산·학·연 기술교류회를 구성하고 550여명의 전문가들을 통해 산업계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기술 개발에로부문을 전략성·방향성·파급성의 3대 요소에 따라 680개의 우선지원분야를 도출한 것이다.

■ 기술교류회별 산업기술개발 대상분야(중전기기)

| | |
|------|---|
| 중전기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성능 교류 서보전동기 ○ 전력관리 제어시스템 ○ 고신뢰성 전원장치 ○ 전원변환장치 ○ 특수 전동기 ○ 소형 발전기 ○ 연료전지용 전력변환 시스템 ○ 절연재료 ○ 대용량 전원장치 ○ 고압대용량 SMPS ○ 선형 전동기 ○ 직류 전동기 ○ 전기용접기술 ○ 차단기 ○ 유도가열장치 ○ 변압기 ○ 변성기 ○ 초전도 응용기술 ○ 전력용 반도체소자 기술 ○ 전기집진기 |
|------|---|

을 內資구매 계획 豫示

— 조달청, 309품目 3.2조원 상당 —

조달청은 올해에 집행할 309개 품목(연간 1억이상 구매물품 대상) 3조 1919억원 상당의 내자구매 계획을 규격 및 성능, 계약시기, 구매수량, 계약방법 및 가격산출기준 등을 정해 예시했다.

올해 내자구매 품류별 예시액을 보면 레미콘·시멘트 등 양회류가 9604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철근 등 철재류로 7993억원, 유류 및 연료가 3954억원, 기계 및 기구가 2830억원, 자동차 등 운반기구가 2146억원 순이다.

업계의 계획생산 지원 및 안정적 적기공급을 위한 단가계약 구매계획은 199개 품목에 2조 6021억원 상당으로 전체 예시규모의 82% 수준이며 중소기업 및 지방업체 지원을 위한 구매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생산제품 구매 1조 9500억원, 지방업체 지원은 1조 8천억원으로 올해 총내자 구매계획 3조 3천억원의 59%와 55% 수준이다.

조달청은 업계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신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지난해보다 약 122% 증가한 2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고가의 종합설비물자는 규격, 가격 분리입찰로 지난해보다 약 90%가 증가한 300억원 상당을 구매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활용품(화장지·신문용지·전자복사지 등)을 지난해보다 9.5% 증가한 265억원 상당을 구매키로 했다.

또한 종합낙찰제 실시품목을 현행 9개에 72억원 상당을 구매했으나 올해부터는 9개 품목(냉동기·송풍기·발전기·전기 온수기·항온항습기·공기청정기·공기압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을 추가해 18개 품목에 200억원 상당을 구매할 계획이다.

◇ 조달청 내자 구매 계획

(단위 : 백만원)

| 품 목 | 단 가 계약 | | 총 액 계약 | | 계 | |
|-------------|--------|-----------|--------|---------|-----|-----------|
| | 수량 | 금 액 | 수량 | 금 액 | 수량 | 금 액 |
| 사무용품 및 비품 | 10 | 138,662 | 2 | 24,370 | 12 | 163,032 |
| 인쇄물 및 종이 | 22 | 25,018 | - | - | 22 | 25,018 |
| 섬유류 및 고무제품 | 58 | 21,125 | 51 | 7,976 | 109 | 29,101 |
| 화공의약품 | 29 | 125,444 | - | - | 29 | 125,444 |
| 유류 및 연료류 | 4 | 395,400 | - | - | 4 | 395,400 |
| 시멘트류 | 2 | 960,400 | - | - | 2 | 960,400 |
| 콘크리트 및 석제품류 | 9 | 83,324 | 3 | 50,543 | 12 | 133,867 |
| 목재류 | 3 | 17,864 | - | - | 3 | 17,864 |
| 철재류 | 27 | 695,638 | 7 | 103,700 | 33 | 799,338 |
| 운반기구류 | 15 | 106,250 | 12 | 108,350 | 27 | 214,600 |
| 기계기구류 | 16 | 20,795 | 31 | 262,250 | 47 | 283,045 |
| 전선류 | - | - | 1 | 15,000 | 1 | 15,000 |
| 기타 | 4 | 12,270 | 4 | 17,600 | 8 | 29,870 |
| 계 | 199 | 2,602,190 | 111 | 589,789 | 309 | 3,191,979 |

프리볼트 電氣用品 생산 허용

- 工振廳, 國內 製品개발 · 輸出애로 감안 -

프리볼트 전기용품의 생산이 다시 허용됐다.

공업진흥청은 관련기관·학계·업계 등 전문가회의를 거쳐 '220V 승압에 따른 기술기준 운영요령'을 개정고시하고 프리볼트 전기용품의 생산을 다시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승압정책(전압을 110V에서 220V로 높임)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 대상품목에 대해 110V단용 및 110V/220V 겸용 전기용품 생산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미국·캐나다는 120V와 240V, 일본은 100V와 200V, 프랑스·러시아·독일·사우디 등은 127V와 220V등의 표준전압을 택하고 있어 국내업체는 수출 및 제품개발 등에 애로를 겪어 왔다.

220V 승압에 따른 기술기준 운영요령 개정품목 현황

△ 프리볼트 제품(80~260V) 생산허용 품목=TV·VTR·면도기

△ 110/220V 겸용제품 생산허용 품목=전기펌프·모니터·프린터·TV 수상기용부스타·잡음방

지기

△ 110V 또는 220V제품 선택생산 품목=전기그라인더·전기샌더·전기드릴·전기대패·전기톱·전기드라이버·기타전동공구·정류자전동기·전기연탄가스배출기·직류전원장치·관상허용히터·전기이발기·조광기·전기머리인두·전기면도기·전기맛사지기·파마넨트기·전기뜸질기·전기모포·전기이불·전기방석·전기요·전기장판·모발건조기·전기칫솔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취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중 개정령(안)>

2. 주요내용

가. 공장입지금지지역 고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고시 대상지역을 업종·규모등에 관계없이 일체공장입지가 금지되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지번, 지적, 도면등 고시방법중 간편한 방법을 택일

나. 폐도등 용도폐지된 국·공유재산을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특례처분할 수 있는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면적제한 완화 및 전체 공장용지면적에 대한 비율제한 완화)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제고함.

다.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94. 1. 1 시행)으로 공장증설이 금지된 준농림지역내 중소기업자의 기존공장에 대하여 공장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요건(시설자동화·공정개선의 추진등)을 정함.

- 라. 사후관리가 면제되는 수출대금 미회수금액 및 수입대금 비지급금액의 범위(미화3만달러 이하)를 정함.
- 마.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신고만으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 가능한 건설기계의 범위(불도우저등 21종)를 정함.
- 바.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제의 원칙적인 신고제 전환에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허가제가 존치되는 지역의 범위(학교·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와 허가절차를 정함.
- 사. 화재·폭발등의 위험발생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플레어스택의 가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적용하는 특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플레어스택의 부적정운영의 경우(정상가동상태에서 임의의 2시간동안 5분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를 정함.
- 아.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활동의 고충을 신속히 접수·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기업애로신고센터를 통산산업부령이 정하는 경제단체에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
- 자. 기업활동규제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제부처 국장급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 위원회를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토록 하고, 동 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행정규제와 관련된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는 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차. 위원회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절차를 정함.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 가.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안에 공장설립을 유도하는 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수립토록 되어 있는 공장설립유도지역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입주허용 공장의 업종 및 규모, 지원시설의 설치,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

- 나. 2인이상의 중소기업자등이 공동으로 공장입지승인등을 신청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동설치 및 공동이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공장입지승인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진입도로, 환경보전시설, 기반시설 등)를 정함.
- 다. 수출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을 할 수 있는 범위(미화 3만달러이하의 자동승인품목의 수출)와 수출신고를 한 경우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취소불능 일람불화환 신용장방식에 의한 자동승인품목의 수출)를 정함.
- 라. 압력용기에 대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 중 2이상의 검사를 같은 연도내의 각각 다른 시기에 받아야 하는 경우, 입주기업체가 해당 검사기관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검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현재 국가공업단지, 수출자유지역등)에 지방공업단지, 농공단지, 유치지역 및 공장설립유도지역을 새로이 추가함.
- 마.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함에 따른 해외자원개발계획의 신고절차를 정함.
- 바.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활동의 고충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수사 및 현집행에 관한 사항 등)를 명확히 정함.
- 사.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활동의 고충을 신속히 접수·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추가로 기업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할 경제단체를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한국영영자총협회로 정함.
- 아. 위원회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정함.